



“ 대학 연구 · 산학협력의 중심 ”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 협의회

<http://www.kucra.or.kr>

수신자 전국대학(교) 총(학)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제목 산학협력단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경찰청 협조요청 안내

1. 귀 대학(산학협력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종사할 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시 대학 총장 명의로 신청하고 본교의 인·허가증을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첨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사항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산학협력단의 채용·인사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협조요청 >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의무규정)
- 나. 학교(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 산학협력단은 학교는 아니나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는 각 대학교 내부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의 기관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에 종사하는 연구원, 강사 등은 사실상 대학교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예정자 포함)로 볼 수 있어 성범죄경력 조회대상이 되고, 채용하려는 용역 수행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기 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라. 다만 산학협력단은 동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증이 나오는 기관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할 종사자 등에 대해 직접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마. 따라서 동법 제5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인 대학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대학 총장의 명의로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 확인을 위하여 본교의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주셔야 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 끝.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



수신자

사무국장 김광제

회장 이흥우

협조자

시행 전연산협 제2020-06(2020.05.08.)

접수

우편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310호

전화 회장 (042)821-8720 전송 회장 (042)823-0487 이메일 회장 sorrydl@cnu.ac.kr

사무국장 (042)939-4701

사무국장 (042)-821-1585

사무국장 kimkj@hanbat.ac.kr